

35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서

[별첨 자료]

한글번역본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보고서>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본 보고서는 더 높은 전달력을 위해 ~습니다 체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

사무국의 의견서

사무국은 이사회 결의안 32/2에 의거해 작성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비티 문타폰(Viti Muntarbhorn) 의 첫 번째 보고서를 인권 이사회에게 제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인류의 다양성, 다양성의 인류"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은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 하에서 성적 및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형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는데 있어, 일부 집단과 개인이 특정한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폭력과 차별의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전문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무에 대한 주요 논의는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국제규범의 이행과 모범사례 및 간극 확인, 폭력과 차별 문제 및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 정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문 그리고 협력;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국가의 노력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포함합니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합의된 동성 관계의 비범죄화; 효과적인 반차별 수단; 성별 정체성의 법적 인정; 비병리화와 연결된 비낙인화;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 공감의 증진을 포함하는데 향후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질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사람들의 다양성 ("인류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하고,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 관용과 이해, 인권 준수와 다양성 ("다양성의 인류")에 내재된 인류애와 포괄성을 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 하에서 모두에게, 모두를 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 서론

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임무는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32/2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태국의 법학 명예교수인 비딕 문타본은 첫 번째 특별절차 수임자로 임명이 되었고 2016년 11월부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전문가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는 독립전문가의 3년 수임기간 중 첫 번째로 제출되는 보고서로써 2017년 3월까지 임기 초반 몇 달 간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립전문가는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시민 사회, 개인들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조에 큰 감사를 보냄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그 정보는 점진적으로 그의 분석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사람들은 일정 형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외적 성격을 띠며 한 개인이 타인에게 느끼는 성적 이끌림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성별 정체성은 내적 성격을 띠며 한 개인이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性)을 지칭하는데, 태어날 때 지정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모두의 고유한 권리이며 모두 예외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특정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실제로 가진 또는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은 종종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인권 침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만연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살인, 강간, 폭행, 고문,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자의적 구금, 유괴, 괴롭힘,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 어린 나이부터 당하는 괴롭힘, 자살로 이어지는 압박감, 혐오 선동에 의해 심화된 차별적 행위와 조치들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사건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대응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교육제도, 시민 사회 관계, 국가별 상황과 국제적 맥락 모두를 아우르는 지역적·세계적 현상입니다.

3.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사람들의 다양성(인류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하고,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 관용과 이해, 인권 준수와 다양성 (“다양성의 인류”)에 내재된 인류애와 포괄성(다양성의 인류)을 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 하에서 모두에게, 모두를 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II. 방법론

4. 독립전문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인권이사회에서 설정된 수임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임사항의 착수부터 독립전문가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수임사항을 부여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월, 독립전문가는 제네바에서 정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와 기타 주체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공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목적은 수임사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문회의는 생중계 되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들은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독립전문가로서 수임사항을 착수한 이래로 본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서면 및 구두로 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립전문가의 접근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초기 보고서이며 차후에 심도 있게 다뤄질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 정부간,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균형 있게 다루고 갖가지 자료에 비추어 보려는 독립전문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 이는 독립전문가로서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독립전문가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5. 국가 방문 계획,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부정적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영향을 받은 집단과 개인, 정부, 지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여타 특별절차 수임자, 인권 조약기구와 유엔 기구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체와의 협력 역시 방법론 중 일부에 해당됩니다. 독립전문가의 첫 국가방문은 2017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이뤄졌는데 그의 사후 보고서는 온라인상으로 열람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관한 개별 보고서는 차후에 발행될 것입니다. 독립전문가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 모범사례가 될 아르헨티나의 주요 진전 사항들에 감명 받았습니다.

III. 수임사항

6. 수임사항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꼭 생각해보아야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임사항에 있어 단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첫날부터, 독립전문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고려된 균형 잡힌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약어 “LGBT”는 논의에 자주 등장하며 이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LGBT는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양성애자 (Bisexual)와 트랜스젠더 (Transgender)를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용어를 헷갈려 합니다. 전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 하길 원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반대로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 하길 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간성 (Intersex, LGBTI에서 I)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설명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임무는 위와 같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집단을 다루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연관되지 않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7. 둘째, 유감스럽게도 모든 사회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과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의 사용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는 이해의 부재(혹은 이해의 어려움) 및 오해를 양산하고 이러한 딜레마는 폭력과 차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이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모든 사회에 크고 작은 다양한 “혐오”를 일으키는 편견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많은 유엔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LGB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간성을 일컫는 “I” 더해 “LGBTI” 라고 사용합니다.

8. 셋째, 독립전문가의 수임사항을 설정한 인권이사회결의안 32/2의 전문에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감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대응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전문은 세계인권선언을 재확인 합니다. 특히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지니는 국제인권법과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의 관계를 논하자면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 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의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결의안 32/2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은 모든 인권은 보편·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인권을 범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태도로, 대등하게, 또한 같은 중요도로 다루어야 함을 또한 국가와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모두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적 체제와 상관없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넷째, 전문은 국제인권 의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폭력, 차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와 다른 모든 형태의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을 강화할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인종 같은 다른 형태의 차별에 기반한 문제들 간의 교차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0. 다섯째, 독립전문가는 이사회 결의안 32/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임사항을 요구 받았습니다 .

“(a) 모범 사례와 간극을 모두 확인하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사항을 평가할 것.

(b)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것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다룰 것.

(c) 유엔산하기구, 프로그램과 기금, 지역별 인권 메커니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별메커니즘, 시민 사회 단체와 학술 기관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국가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d)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할 것.

(e)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다룰 것.

(f)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 기술적 지원,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실행, 촉진, 및 지원할 것.

11. 위에서 언급된 수임사항의 핵심 요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모범 사례와 간극 확인 및 국제규범의 이행; (b) 폭력과 차별이슈 및 그 근본원인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c)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자문 그리고 협력; (d)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대응; (e) 국가의 노력을 조력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다른 관련 서비스 지원. 이 요소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상황분석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12. 특별절차의 역할에 따라서 독립전문가의 활동은 최소 다음 네 가지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a) 수임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 (b) 주기적으로 국가 방문을 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 (c) 피해자로부터 인권 침해 사항을 제보 및 개인진정을접수해 국가 혹은 관련기구와의 소통과 영향력 행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 (d) 타 주체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현재 작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일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인권옹호자들이 받는 위협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V. 차별과 폭력의 파노라마

13. 이번 장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및 관련 대응책 일부분을 설명하기에 범세계적인 이 문제의 규모와 범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독립전문가의 향후 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4.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12개 유엔 기구의 성명에 따르면, 유엔과 다른 기관들은 전 지역에 만연해있는 살해, 폭행, 납치, 강간, 성폭력과 고문, 시설 및 기타 환경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여러 형태를 띤 LGBTI 에 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기록했습니다. LGBTI 청소년과 레즈비언,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여성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특히 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 및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LGBTI는 박해로부터 도피하거나 인도적 긴급구호 과정에서도 때때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을 바꾸기 위한 비윤리적이고 침습적인 “치료”, 강제 불임시술과 생식기 및 항문 검사,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간성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등 그들은 의료 환경에서도 학대를 경험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폭력은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조사 및 기소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만연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제 및 지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근절하려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은 종종 탄압받고 차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15. 다음과 같은 간극과 과제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Living Free and Equal)’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범죄화, 차별적 태도, 경찰의 괴롭힘, 낙인, 구금 및 의료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 보호 법률의 부족, 항의 체계의 부재,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인지 부족은 아직도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합의된 동성 관계는 아직 73개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들을 체포, 협박, 갈취와 낙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다섯 국가가 동성애를 비범죄화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차별적인 법을 제안하거나 채택했으며 제재가 그 범위가 넓혀졌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차별적인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16. 아래에는 폭력과 차별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부 및 다른 주체들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파노라마의 밑바탕에는 가정에서부터 교육 체계, 시민사회 환경, 국가 차원과 그 너머로 이어지는 폭력과 차별의 다차원적 성질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현상으로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 될 것입니다.

V. 소견

17. 특별절차 수임자의시작점은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국제인권법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의 상호관계에 기초하며 특정 집단의 새로운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각 국가 및 상황의 맥락에 맞는 특성 또한 중요합니다. 비록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간성)의 상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동성 관계는 사형을 선고 받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같은 국가에서 트랜스젠더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는 사람들은 성별 정정 수술을 위한 도움 및 인정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도시 대 농촌), 인구 통계학적(예: 교육 및 경제 수준),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식이나 이해 또는 지식의 부족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국가별로 또 각국 내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19. 다음 소견은 수임사항의 핵심 요소에 대한 초기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A. 국제 규범의 이행과 모범사례 및 간극 분석

20. 국제인권규범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 및 국제법상의 비폭력 및 반차별의원칙 강화의 필요성을 공고히 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권 보호의 기원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선택의정서를 동반하는 9개의 핵심 국제 인권 조약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위의 조약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2조와 모든 인권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조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 어떠한 구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1. 다른 조항 (예: 세계인권선언 제 7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6조)은 차별 없이 모두가 같은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재확인합니다. 동성 관계를 금지하는 지역법에 관한기념비적인 사건인 *Toonen v. Australia*을 계기로 차별제한에 대한 논의가 인권이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지역법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규약 제 17조를 위반했으며 제 2조 (1)과 제 26조에서 언급하는 “성”은 성적 지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모니터링 위원회는 규약에 의해 보장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성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니터링 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작성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권고들을 국가들에게 내렸습니다.

23. 모든 국가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 이상의 특별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특히 비폭력 및 반차별의 관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다뤄졌는데,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4. 현재 이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인권 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논평과 권고를 내는 인권 조약 기구들부터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특별 절차, 결의안 및 연구에 이르는 국제인권기구 및 절차들 그리고 국제인권제도들은 차별 없는 인권옹호와 보호를 강화 시켰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개인의 보호와 독립전문가의 임무는 국제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실행에 의해 보완되고 보충됩니다.

25. 모든 국가는 최근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2015-2030동안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옹호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사회와 사법 접근성을 다루는 16번 목표는 모두 함께 하는 세상이란 원칙을 기반으로 폭력의 상당한 감소와 반차별 수단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개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26. 지역 기구들의 주도적 참여는 건설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인권 체계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에 있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이하 '유럽인권협약')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다루면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또한, 협약의 조항들 중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고문의 금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들은 사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유럽 전역과 아시아까지 지역적으로 연결된 많은 사건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기본권 헌장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여 정책을 만들거나 행동을 취하는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시켰습니다.

27. 미주 체계는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인권 관련 선언 및 협약과 지역 인권 재판소 및 위원회 외에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문제만을 다루는 지역 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미주기구 총회는 최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두 가지 조약 즉,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관용에 반대하는 미주 간 협약'과 '고령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미주 간 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28. 위에 언급한 수단들을 보완하여, 실제 또는 추측되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2014년의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결의안 275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주체가 범하는 모든 폭력과 학대를 국가가 막을 수 있도록 실제 또는 추측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처벌하고 금지하는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적합한 조사와 기소, 그리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법 절차를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29. 지역간 협력은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인권위원회와 유엔이 2016년 공동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제공한 기회와 연결 지으며,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규범의 주류화를 촉구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동회담은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조치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인종, 종교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 없이 동료를 존중하며 생각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을 증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모든 개인에게 촉구하는 헌장 제 28조에 따라 위원회는 LGBT와 간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 합니다.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에서 언급한 국가 행동의 긍정적인 예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소 19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법제 하에서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모잠비크는 2014년 그러한 행동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를 해제했으며, 르완다와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법률을 도입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저항했음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7개의 국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츠와나와 케냐의 법원은 최근 LGBT 집회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위헌이라 선언했고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인권위원회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인권 침해에 반대함에 역시 주목했습니다.

30. 다른 지역인권 규범은 폭력과 차별에 대항해 인권을 옹호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아랍 인권 헌장 제 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의 각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적 신념, 의견, 생각,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출생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이 조항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각 관할구역의 개인에게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31. 2012년 아세안(ASEAN) 인권 헌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나이,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신, 장애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어떠한 구별 없이 여기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32. 최근 건설적인 모범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전이 항상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륙의 많은 국가들은 구식이고 폐쇄적인 법률과 정책의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지역의 국가들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지지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미국,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동성 커플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벨리즈 대법원은 동성 관계를 금지하는 구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이셸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는 동성 관계를 금지한 식민지 법에 의해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성 관계를 금지하는 법 자체는 그 이전에 폐지됨.) 독일 역시 나치 시절 동성애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제국 시절 형법 제 175조에 의해 42,000여건의 유죄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33. 그러나 폭력과 차별의 근본 원인 및 배경과 연계된 몇 가지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인권조약 당사국인 나라들과 대응 가능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도 때때로 트랜스젠더의 살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혐오 발언과 같은 폭력과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경계를 촉구한다.

B. 폭력과 차별 이슈에 대한 인식 및 근본 원인

34.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폭력과 차별의 교차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 또는 추측되는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 때문에 낙인이 찍히고 차별을 받습니다. 다른 차이 중에서도 레즈비언, 게이 및 트랜스젠더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폭력과 괴롭힘, HIV 감염,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가 위법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될 공포 때문에 의료서비스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35.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폭력과 차별의 연관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어떤가요? 인지의 부족, 잘못된 이해, 오해와 양면성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유년기에 가정 및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을 통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식과 지식의 부족은 빠른 소셜 네트워크의 속도로 인해 사회, 문화, 정치적 지위의 바닥에서 맨 위까지 만연한 고정관념, 동성애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에 의해 더 심화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때때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이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살해, 강간, 폭력 선동과 잔인한 대우와 같은 혐오 범죄는 개인 적인 수준에서부터 제도적 수준에서의 선입견, 비관용, 편견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36. 근본 원인으로서는 무엇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실증 연구가 필요하지만, 폭력과 차별 뒤에는 종적이며 세대간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만드는 부정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건강의 측면에서 다음의 인용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구의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은 HIV 감염의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만연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젠더권력의 불균형과 오래된 성적 및 성별 규범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해 야기됩니다. 또한, 차별적이거나 가혹한 법률 및 공권력 사용, 그리고 낙인과 차별을 합법화하는 문화 및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폭력을 조장합니다. 더 많은 정책과 법률이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혐오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HIV 감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7. 현실적으로 폭력과 차별을 낳는 환경 이면에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및 정치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시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래에서 먼저 언급될 것이며, 이후의 독립전문가의 보고서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시점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전략의 일부로서 필수적입니다.

- 합의된 동성관계의 비범죄화;
- 효과적인 반차별 규범;
-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
- 비병리화와 연결된 비낙인화;
- 사회문화적 통합;
- 교육과 공감의 증진;

C.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문 그리고 협력

38. 건설적인 대화는 임무에 있어 필수적이며, 독립전문가는 업무 초기부터 이것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높은 인식과 이해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인식합니다. 원만한 담론을 위해 살인, 강간, 고문, 차별과 같은 범죄에 대한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화과 자문, 협력의 기회는 2017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공공 자문회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문회의는 국가들, 유엔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자문회의는 독립전문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선순위 업무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의 현황과 위와 아래에 언급된 다양한 시사점을 포함했습니다. 자문회의 막바지에서 독립전문가는 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자문해준 다양한 참석자들의 중요한 조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 분석: 임무 수임자의 활동은 도래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 교육: 해당 활동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대중에게 현황을 알리는 교육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접점: 독립전문가는 해당 활동을 통해 정부, 비정부, 정부간 등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 초점/입장표명: 해당 활동은 범죄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존자 및 전문가로서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는데 도움이 줍니다.
- 실증: 해당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적인 접근을 위해 세분화 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D.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 분석

39. 폭력과 차별은 종종 단일 사건이 아닌 오랜 악순환의 일부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원화 되어있어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구조적으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되는데, 피해자가 단순히 다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졌다고 공격과 차별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소수 또는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추가로 아동, 어린 소녀, 간성,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성은 사건, 주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데 얽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해당 피해자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무한히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현상의 복잡한 본질에 의해 악화되는데, 가정에서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및 국제 스펙트럼까지 비차별이 만연한 경우범죄의 피해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되풀이 됩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세상과 소셜 미디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혐오발언에 기인한 혐오 및 폭력 선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권침해로 이어집니다.

40. 일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의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는 난민과 이민의 맥락에서, 특히 위험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난민 및 이주민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LGBTI 난민들은 망명한 국가에서 또는 국내 실항민으로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차별을 경험할 것입니다. 박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동성 관계를 계속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 LGBTI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E. 국제 협력과 국가의 노력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

41. 이 부분은 독립전문가의 활동이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영역입니다. 이러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이미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지만 이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유엔아동기금(이하 UNICEF),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이하 UNODC),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UNWFP), 유엔여성기구(이하 UN-Women),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UNESCO),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세계은행(이하 WB)와 유엔에이즈프로그램(이하 UNAIDS) 등 12개 유엔 기구의 공동성명 (위의 14번 문단 참조)은 기구 간 협력의 발단이 된 중대한 돌파구입니다. 2017년 1월 독립전문가가 개최한 공공 자문회의에서 유엔인간정주계획(이하 UN-Habitat) 로부터 위와 비슷한 옹호가 있었고 같이 협력하는 기구들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42. 독립전문가는 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다른 주체와의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을 고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칭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교육 환경에서의 따돌림 문제를 다루는 데 관여하는데, 이것은 Teaching Respect for All initiativ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성애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해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토론하기 위한 교사지도안을 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43. 2016년 발간된 유네스코 보고서 “Out in the open: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표현에 기반한 폭력에 대응하는 교육 부문”은 이와 관련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네스코는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와 비정부기구의 도움과 함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4. 유니세프의 활동은 특히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 문제에 대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것을 아동 및 청소년과 연결 짓는 것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 전략의 일환입니다. 유니세프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영감을 받아 아동보호를 주로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6번 목표는 향후 15년 이내에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아동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4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출판물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남 (Born Free and Equal): 국제인권법 하에서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Living Free and Equal)’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OHCHR은 국제인권 조약 기구들과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및 특별절차를 지원하고 현안을 교차적인 유엔 환경에 주류화 되도록 돕습니다. 다른 파트너와 함께 매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하 IDAHOT) 행사 개최를 돕고 있습니다. OHCHR의 현장 활동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전파하고 수집하며 침해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Free and Equal)’ 캠페인은 출판물, 영화 및 영상물 등을 이용한 정보 캠페인으로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관점을 채택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지를 촉진합니다.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이 가족과 공동체에 한 무수히 많은 공헌을 보여주는 영상 ‘얼굴들(Faces)’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환영 (The Welcome)’은 음악을 활용한 발리우드의 특징을 가진 영상으로서 인권에 대한 교훈을 남기며, ‘수수께끼(The Riddle)’에서는 전 세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학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46. 유엔개발계획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에 대한 범세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조활동의 범위는 국가의 핵심체계(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지방정부와의 대화의 장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부기구 및 인권옹호자들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핵심 체계에까지 이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유엔개발계획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 통합 지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기여합니다. 일부 활동은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HIV에 대응하는 것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며, 많은 나라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놓여있는 법적·사회적 환경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7. 유엔인구기금은 정책 입안, 역량 개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통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해당 권리와 건강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은 낙인을 드러내는 낙인 지표 도구를 개발했고 비낙인 및 비강제 원칙에 따라 콘돔과 윤활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단체는 HIV 관련 낙인을 줄이기 위해 취약 집단에도 접근했으며, 동성 관계와 성 노동 및 마약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음지로 내모는 형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48. 특히 성 건강 분야에서의 세계보건기구의 활동은 난민, 망명자, 무국적자가 경험하는 교차성 문제를 다루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언급할 때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중동의 전쟁 상황으로 인한 유럽 및 다른 지역으로의 난민 유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유엔여성기구는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간성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강조해왔는데 각 국가 상황의 파악,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및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례로 말라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은 레즈비언,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보완하여 국제노동기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문제를 ‘좋은 일자리’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동성애혐오가 발생시키는 비용에 대해 조사하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배제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엔 국가팀에 의해 강화된 다른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들은 점진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국가 프로그램 기획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49. 시민사회와 비정부 기구, 관심 많은 지역공동체 및 개인의 역할은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언은 이 임무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에서 나오는 풍부한 정보는 독립전문가의 활동에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꼭 필요한 협력의 일원이며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인권옹호자로서 행동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이 특별절차 수임사항의 핵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대중의 활동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적 및 성별 다양성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0. 같은 맥락에서 정치, 문화와 종교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부문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일터와 상업/금융/투자/개발 분야에 통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표와 연계된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의 생성을 촉진하여 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이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특히 다자 간, 지역 및 양자 간 협력을 도모하는 17번 목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 시민 사회 및 사업 분야 간의 삼자 협력뿐만 아니라 남-남 협력에 대한 전망은 밝으며,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와 그 영향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VI. 시사점

51. 폭력과 차별의 근본 원인과 배경은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립전문가는 향후 다음 단락에서 설명된 시사점들을 점진적으로 활동계획의 한 부분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이루어질 보다 상세한 보고서의 전조로서 간략하게 논의됩니다.

A. 합의된 동성관계의 비범죄화

52. 합의된 동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률과 정책은 폭력과 차별을 낳는 배경 환경의 일부입니다. 약70개국에서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 특히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약 40개국에서 여성과 성교하는 여성의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역시 부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간접적인 성격의 다른 법률과 정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지역 형법 및 규정으로 둔갑하는 공공도덕,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다루는 법률이 포함됩니다. 엄격히 적용될 때, 여러 가지 종교법에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는 여성처럼 옷을 입거나 그 반대의 크로스 드레싱도 범죄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범죄화는 개인이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을 침해합니다.

53. 최근 유엔난민기구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동성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대다수의 법률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응답자들에 의해 언급이 되었으며 일부 사무소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겨냥한 유사 법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많은 응답자들이 LGBTI의 인권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보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의 일부 국가들에는 LGBTI 표현의 핵심 요소들을 범죄화하는 법률이 남아있습니다. LGBTI를 대상으로 한 법률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의 광범위한 정체성보다는 특정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일 수 있지만, 일부 사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이 LGBTI로 정체화 하는 개인을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국가의 응답자는 LGBTI 정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성 행위만이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LGBTI 사람들은 추정된 성적 취향만으로 당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54. 따라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데 악용이 되는 이러한 법률들을 비범죄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B. 효과적인 반차별 수단

55. 반차별 조치가 부족하거나 충분히 취해지지 않아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육 제도, 직장 및 전반적인 삶을 포괄하는 종적인 과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성적 및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사이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집단이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종종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며 이는 탈학교를 조장하는데 그들은 주변화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6. 차별 또한 교차적입니다.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제의 요소들은 레즈비언 및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인 난민과 이민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단주의 요소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집행 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요구와 도움 및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적 정의, 메커니즘 및 인력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문제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이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적 및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며, 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차별 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C. 성별 정체성의 법적 인정

57. 많은 국가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성별 정정 수술을 했더라도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힘들며, 평생 학대와 차별을 견뎌야 합니다. 비인정은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성별 정정 수술과 심리적 평가, 전환 치료, 불임과 같은 의료 절차 및 이혼을 강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방해물로는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호르몬 치료와 같은 의료 진료 접근과 교육, 주택, 알맞은 생활수준 및 고용 기회와 같은 삶의 수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몰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같은 여러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료적 장애물을 줄임으로써 수술이나 관련 의료적 절차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국내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린 나이에 강제적으로 수술을 받는 간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폭력과 차별과 상호 관련 있으며, 이로 인해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 삶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인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선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방법 없이 스스로 정체화 하는 성별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비병리화와 연결된 비낙인화

58.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낙인,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폭력과 차별은 의료 및 관련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병리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형태의 질병, 정신 장애, 신체 위화감 또는 부조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 성적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병리적 접근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이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게이는 더 이상 국제적인 차원에서 병리화를 직면하지 않지만, 개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아직도 전환치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간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그들이 국제질병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질병 분류는 현재 낙인을 줄이기 위한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호르몬 및 관련 치료와 같은 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낙인을 초래하는 꼬리표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비낙인화와 비병리화는 의료, 과학 및 윤리 부문과의 보다 많은 협력을 가능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인간의 자연 상태의 일부라는 공통된 인식을 촉진시키며, 상호 관련하여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존중 하도록 합니다.

E. 사회문화적 통합

59. 많은 국가에서 유감스럽게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배제 됩니다. 소외와 주변화는 여러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일부입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들은 학교에서 종종 괴롭힘을 당하고 거리로 밀려 난 후 블랙마켓에 뛰어 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일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고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주택에 대한 접근, 적절한 생활수준의 확보 및 개인 안전과 같은 문제에 의해 매일 도전 받고 있습니다.

60. 반대로 포괄적인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기타 분야의 지도자가 그 포괄성을 전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및 다른 신념 체계는 보살핌, 동정심, 관용 및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나 신념에 대한 접근이나 해석이 있는 지역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문화적 배제를 초래하며 폭력과 차별로 이어집니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배제는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갖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사람들을 숨어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HIV/AIDS와 관련해 질병 통제를 어렵게 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경제적/재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F. 교육과 공감의 증진

61. 교육 및 인식 부족과 이해 부족은 폭력과 차별의 저변에 있는 어릴 때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공포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적 스펙트럼의 질과 우리 모두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단계에서 이 문제를 커리큘럼에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예: 간접적으로 보건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초점을 둔 특정 과정을 통해) 다루질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현재 살펴보고 있는 진입점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교육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 및 도움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서로 공감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 교사, 학부모 및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과 교과서의 재평가와 인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열린 사고방식과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도구 및 방법론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VII. 결론

62. 본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첫 번째 보고서이며, 주제는 “인류의 다양성, 다양성의 인류”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며 국제인권법 메커니즘 아래 성적 및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및 국제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일부 집단과 개인이 특정한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폭력과 차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 얽혀 있고 특정 맥락에 대한 분석 및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권리이지만, 집단과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63. 본 보고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옹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과 차별의 다층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육 영역으로 확장되고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환경과 보다 넓은 범위로 이어집니다. 이는 종적 궤도를 그리며 세대간 영향력도 가집니다. 또한, 이는 동시에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적이며,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고 체계적이고, 때로는 제도적 폭력 및 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상호 존중과 관용을 증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64. 본 보고서는 독립전문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무에 대한 주요 소견으로 특히 (a) 모범사례와 간극의 분석과 함께 국제규범의 이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 (b) 폭력과 차별 이슈에 대한 인식 및 그 근본원인; (c)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문 그리고 협력; (d)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심화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 분석; (e) 국제 협력과 국가의 노력을 돕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65. 다양한 핵심 시사점들은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독립전문가의 보고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질 것입니다.

VIII. 권고사항

66. 다음의 초기 권고사항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위자, 특히 국가의 건설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a) 독립전문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호와 다음과 같은 핵심 시사점을 연결하는 활동계획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합의된 동성관계의 비범죄화, 효과적인 반차별 수단, 성별

정체성의 법적 인정, 비병리화와 연결된 비낙인화,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 공감의 증진.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협력과 정보를 환영합니다.

(b) 2017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인 두 번째 보고서에서 독립전문가는 위에 요약된 핵심 시사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심 많은 다른 주체들이 독립전문가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초까지 관련된 정보를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c) 각국은 핵심 국제 인권 조약(아직 하지 않은 경우)을 비준하고 파트너와 협력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정책, 프로그램, 활동, 사례 집행, 메커니즘 및 인력, 자원(물질적 및 비물질적), 정보와 모니터링, 교육과 역량 구축, 책무성 및 구제, 대화와 개혁을 위한 공간을 갖춘 시민사회에 개방된 참여 과정과 폭 넓은 동원 및 네트워킹과 같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d)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 조약기구의 권고,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및 특별 절차에 대해 효과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 촉구 됩니다. 위의 맥락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연계 및 지원 또한 중요합니다.

(e)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방안을 실행하여 정부 및 기타 행위자는 향후 계획 및 자원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및 정보를 세분화된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f)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국가 수준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여 국제인권기준 이행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및 성별 다양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법 집행관과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g)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과 같은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국가인권기구와의 더 많은 협력이 국제규범과 국가 환경 사이의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착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극복하며 사법정의 및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일부로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역체계 및

계획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h)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비정부기구 및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집단과 개인을 포함한 시민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은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다양한 주체(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의 급습과 보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지도자(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같은)와 의학 및 과학부문 종사자, 사업 부문 및 언론(예: 소셜 네트워크)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교육, 인식 제고 및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i)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비롯한 유엔은 폭력과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후속 행위를 위한 추진력으로 독립전문가의 권고를 염두에 두면서이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조치를 통해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엔의 인권관련 현장 활동들은 중요하며 인권 보호에 큰 격차가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강화되어야 하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유엔 국가 팀의 촉매 역할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를 “보호 적자”가 없고 “보호 공백”이 없는 것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기관간의 협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j) 독립전문가는 임무에 입각해 광범위한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정부, 정부 간 및 비정부)와연대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 방문과 함께 지역의 지혜를 반영하고 “인간 내 다양성, 다양성 내의 인간성”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널리 확산시키는 국제인권법을 전제로 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